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

제안연월일 : 2015년 3월 3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5조 무료이용의 대상자에 “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“을 추가함.

2. 주요골자

안 제5조제10호를 동조제11호로 하고, 안 제5조제10호를 “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
11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시민청(市民聽)"(이하 "시민청"이라 한다)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**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, 행사 공간을 말한다.** **<신 설>** 2. "대관"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 "대관자"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″시민청(市民聽)″(이하 ″시민청″이라 한다)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**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** **2.시민청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**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(현행 제3호와 같음)	제2조(용어의 정의)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개관 및 휴관)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 1. 1월 1일 **2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)**	제3조(개관 및 휴관)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 1. (현행 제1호와 같음) 2.설	제3조(개관 및 휴관) (개정안과 같음)

<신 설> 3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	3. 추석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	
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8. (생 략) 9. 여성결혼이민자	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8.(현행과 같음) 9. 「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	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8.(현행과 같음) 9.(개정안과 같음)
	〈신설〉	10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
10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聽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, 행사 공간을 말한다.”를 “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시민청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설

3. 추석

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
10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

11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시민청(市民聽)"(이하 "시민청"이라 한다)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**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, 행사 공간을 말한다.**	1. ″시민청(市民聽)″(이하 ″시민청″이라 한다)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**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·운영하는 전시,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.**
<신 설>	**2. 시민청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**
2. "대관"이란 시민청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, 공연,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.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3. "대관자"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3조(개관 및 휴관)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	**제3조(개관 및 휴관)**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.
1. 1월 1일	1.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매주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)	**2. 설**

<신 설>	3. 추석
3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5조(무료이용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~8. (생 략)	1. ~ 8.(현행과 같음)
9. 여성결혼이민자	9.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〈신설〉	10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
10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